

-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642
------------	-----

2019년 6월 14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21일, 추승우 의원 외 14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19년 5월 24일

다. 상정일자

-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교통위원회(2019년 6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추승우 의원)

가.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 추진 시 시장과 구청장 간 행정사항 협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 시 발생될 문제점에 대한 문제해결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추진 시 시장과 구청장간 행정사항 협의를 규정함(안 제5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기 간 : 2019. 5. 29 ~ 2019. 6. 5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원안동의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시 시장과 구청장이 행정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서울시의회는 지난 제386회 임시회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장으로 하여금 이용계획 및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¹⁾를 상정·가결한 바 있음
- 다만, 해당 조례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시책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서울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 보유 및 운영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면허 보유²⁾, 주행 가능도로³⁾ 및 안전장구 착용 등의 현안들은 서울시만의

1)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오중석 의원 외 10명 발의, 2019년 1월 31일 발의)

- 심사결과 / 공포일자 : 2019년 4월 30일(본회의 가결) / 2019년 5월 16일

-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 사업추진 및 지원, 시범사업 실시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2)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3)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나.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노력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문제이며, 경찰을 비롯한 관계 기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

- 특히, 최근 여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 사업⁴⁾이 확대되고 있는 와중에 일부 사업자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 등의 민원이 유발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해당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도에 대한 불법 점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점을⁵⁾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 지자체 간의 업무협조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시 필요한 행정사항을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시와 해당 지자체와의 지속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및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생략

4) 보도자료, 「걷기엔 멀고 택시 타기엔 가까워...늘어나는 '공유 킥보드'」, 데일리팝, 2019.6.4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사업 업체(씽씽, 고고씽, 킥고잉, 일레클 등)

- 씽씽 : 서울 강남 지역에서 시범서비스, 연말까지 서울·수도권에 3만대가 공급 예정

- 고고씽 : 서울 강남구, 경기도 성남 판교에서 우선 서비스

- 일레클 : 서울 마포 지역에서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인근 2곳 서비스 확대

- 킥고잉 : 서울 강남·마포·송파·영등포구, 경기도 성남 판교,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등 주요 지역에서 800여대 규모로 운영, 2만대까지 늘릴 예정

5)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후략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시 필요한 행정사항을 구청장과 협의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 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 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u>< 신 설 ></u></p>	<p>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 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 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u>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시 필 요한 행정사항을 구청장과 협의 할 수 있다.</u></p>